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호

1994. 12. 13

수 신 : 의 장

제 목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달성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 □ 目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제시는 물론, 행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 □ 期間

'95. 12. 5~11(7日間)

## □ 場所

군의회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

## □ 監査對象機關

군본청·농촌지도소·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읍면

## □ 監査實施方法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감사자료 검토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회의식 감사
-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확답
- 현지확인 및 관계인 증인을 통한 확인감사

## □ 總評

'95행정사무감사는 제2대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로써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 달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왕성한 의욕을 바탕으로 하여 군민의 날카로운 시각과 질책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깊이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군민 대의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이번 감사는 행정내부사항보다 주민편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도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음.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80건의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사흘간에 걸쳐 미리 보고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수시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치밀하고 상세히 감사되어, 주민욕구 충족은 물론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리고,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신이 결여되고 대충 넘어가기식의 회피성 답변과 중요업무의 답변기피로 인하여 신성한 의회감사의 촛점을 흐리게 한점도 없지 않았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적발과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로 다소 원론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사항이 주요대상으로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점차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정책추진의 어려운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경비절감, 시간절약 등의 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수법사례도 발견되었음.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적사항이 전년도와 중복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며 감사자료가 미흡하거나 누락, 오기사항이 여러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무착오, 오기기재 등으로 변명하고 넘어가기식의 답변이나 억지논리를 주장하는 한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점을 두고 볼때 감사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다음은 불성실한 자료제출, 답변은, 집행부의 반성과 함께 자체 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의원 모두가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 역할을 다해야 할것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는 보다 상세하고 깊이있게 감사되었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규모,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감사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공부 미정리</li> <li>○ 감사자료작성 불성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사업등 도로신설 또는 확장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각종공부미정리로 재산세납부등 소유자 불이익 초래와 공부상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요구시 분쟁요인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등기 미이행 사유지 : 327건 13,148평</li> <li>- 공부상 사유지로된 도로부지(구지면의 경우) : 554건 30,611평</li> </ul> </li> <li>○ 감사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자료마다 계수가 틀리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예 : 건설과, 보건소)</li> </ul>
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발주 지연</li> <li>○ 세입목표액축소 책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된 예산은 신속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95년 제2회 추경예산의 투자사업부문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li> <li>○ 세입예산은 자치단체의 포착가능한 세원을 발굴 목표액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세목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지않고 전체 세입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있음. ※例: 면허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목표액 : 244백만원</li> <li>□ 부과액 : 314 " (129%)</li> </ul> </li> </ul>
문화공보실	○ 지정문화재 외 지원지양 및 예절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문화재관리비 18억원이 대부분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의 요사채, 문종의 사당, 비각 등 비문화재 유지 보수사업에 투자되었음.</li> <li>○ 충효교실과 예절교실을 확대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li> </ul>
내무과	○ 반상회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의견과 전의사항을 수렴하기위해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반회보 배부과정에 사장되거나 그 내용이 주민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반회보 폐간이 요망됨.</li> </ul>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재무과	○ 신규채용공무원의 읍면배치지역	○ 신규로 채용한 공무원을 임용 현업부서에서 근무케 함은 소양과 자질부족으로 대민관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실무수습 교육 과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공직자의 자세, 대민업무 수행능력을 배양 배치하여야 할 것임.
	○ 개인별토지이동상황 미정리	○ 종합토지세 과세물건은 총 129,933건에 납세 의무자가 43,486명으로 개인별 토지의 이동상황이 수시정리되지 않아 대부분 과세 자료가 부정확하여 공부로서 공신력 상실과 납세자로 부터 조세 저항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세체납일소	○ 지방체 체납처분실적 및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보면 국내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56명이나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이 미온적이며 종합토지세 징수는 81.5%, 과년도 미수금 징수 실적이 29%로 극히 부진함.
	○ 공사계약의 적정운영으로 예산절감	○ '95년도 계약내용중 경쟁입찰 59건중 28건은 85%, 25건은 88%, 6건은 98%등으로 계약되었으며, 수의계약 100건중 95~97%가 97건, 92%가 1건, 100% 1건, 82.31%가 1건등으로 불균형한 낙찰율을 나타내고 있음.
	○ 부동산증개업자지도감독소홀	○ 달성군이 '95. 3. 1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여 증개업소가 난립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면서 규정된 수수료 징수율 위반 및 부당 거래 알선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거래가 발생하였음. ※例: 현풍 원교리 모 공인증개사무소의 경우 - '95. 5. 23 유가면 읍리 소재 담 819평을 증개하면서 지주로부터 평당 24만원에 매각요청을 받아 매수인에게 평당 38만씩 받아 그 차액 1억1천만원 착복한 혐의로 대구중부서에 형사입건됨.
사회과	○ 보건지소 의료수가 지연지급	○ 보건지소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조합과 군으로 청구하였으나 의료보험조합은 청구한 그달에 입금이되며,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수혜 지연</li> <li>○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급일 지정</li> <li>○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읍면심의 위원회 활성화</li> <li>○ 어린이집운영 및 노인수당지급 개선</li> </ul>	<p>의료보호대상자의 수가는 군에서는 3~4개월이 상 지연지급하고 있어 지소 운영에 차질이 있음.</p> <p>○ 생활보호대상자를 년말에 책정 의료보험조합에 신속히 통보하여 이중자격자를 사전 배제하고년도개시와 동시에 의료보호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연 또는 근거없이 명단을 보냄으로서 진료비를 사후정산하는등 예산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적기 의료혜택 상실.</p> <p>○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를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여 대상자 대부분 신체장애자나 노인이므로 수령과정에서 불편이 많아 일자를 지정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함.</p> <p>○ 공부상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는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지원이 요망됨.</p> <p>○ 어린이 보육시설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입소가 저조한 것은 불우한 가정을 돋는다는 본래의 취지가 결여 되었으며, 시설운영일지 및 회계장부등 기록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p> <p>○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므로 불편이 많으므로 지급일자를 지정지급하여 불편해소.</p>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개선</li> <li>○ 위생처리장재료 비 집행부적정</li> </ul>	<p>○ 쓰레기 봉투판매실적이 1월 대비 10%감소 되었으며 이는 사회분위기가 이완된 요인으로 보며 봉투를 읍면사무소에서 판매소에 보급하므로 인한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총판제도에 의한 보급방법으로 검토 개선이 필요함.</p> <p>○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 49,157천원 중 1~10월까지 재료비 집행액은 9,898천원에 비하여, 그후 집행예상액은 19,259천원이며 또한 집행잔액이 20,000천원이 발생한 것은 월별 집행계획수립이 부적정함.</p>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산업과	○ 위생처리장증설 사업추진부진	○ 현풍 자모리 위생처리장 용량 증설사업(기존 35㎘/日→65㎘/日)이 지역주민의 증설 반대로 '95. 7. 27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향후 분뇨처리에 지장이 예상됨.
	○ 농산물간이 집하장편증설치	○ 각종 농산물을 농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설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다사, 하빈, 유가등 일부면에만 편증 설치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 농업후계자육성	○ 농업후계자의 육성목적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을 정부차원에서 농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 자립영농을 정착 촉진시켜 농업전문 인력을 확보유지함에 있음에도 지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단이탈하고 있으며 이탈자에 대한 지원자금회수 및 이탈자 방지를 위한 사기진작 및 대책이 요구됨.
	○ 수도병충해항공방제부진	○ '95수도병충해 항공방제사업 추진부진 - 계획 750ha, 실적 300ha(40%)
축산과	○ 한우경쟁력제고 사업부진	○ 농가소득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정부에서 육성지원하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대상농가 16호로 확정 완료가 9호로 사업추진이 부진함.
	○ 사료작물재배 사업 추진부진	○ '95년도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농민의 수혜결여 및 예산운용에 소홀 - 사업비 : 39,260천원 - 집행액 : 16,336 " (41.6%)
지역경제과	○ 전세관광업체 관리 소홀	○ 전세관광버스업체가 국내 8개소의 차고지는 현풍 차모, 구지 수리·오설·도동등 산재하고 있으나 평소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차고지 이용을 하지않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 유료화	○ 화원, 옥포, 논공, 달성공단, 현풍등 도시기능으로 도로폭이 넓은 곳과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유료주차장화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불법주정차방지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요구됨.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산 림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li> <li>○ 조정된노선버스 미운행</li> <li>○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부진</li> <li>○ 비슬산자연휴양림 개장대책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인 가스판매업소가 일반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인근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만약 폭발 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와 이전 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함.</li> <li>○ '95. 3. 1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후 버스노선이 신설, 연장, 중차등으로 조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지 않음.</li> <li>○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45%로 저조함.</li> <li>○ '93년부터 총예산 19억원을 투입 조성하고 있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사업의 목조구조물이 탈색 또는 노후화 되고 있어 보수가 요구되고 현재 개인에게 허가 설치증인 주차장의 수용능력이 120대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제2의 주차장 물색이 필요하며 부대공사로서 진입도로 1.1KM가 미확장되어 교통소통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등 많은 민원이 수반됨에 따른 대책이 요구됨.</li> </ul>
건 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폐자재 처리미흡</li> <li>○ 각종건설공사 설계 감독미흡</li> <li>○ 공사발주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공 상리소교량 및 옥포반송제2교 노후교량과 하수도 준설시 발생하는 오니등 산업폐기물의 처리실적이 없어 토양오염 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li> <li>○ 옥포 마개들 농로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1,000M, 사업비 1억400만원</li> <li>- 현장의 10여군데의 균열에 따른 원인규명과 하자보수 조치 요망</li> </ul> </li> <li>○ 유가 금3리 하수도 암거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내역이 기존도로는 높고 암거공사는 낮게 시공되어 높낮이가 20~30cm 차이로 설계 시공되어 위험요소가 있으며 콘크리트 마감처리가 조잡함.</li> </ul> </li> <li>○ 각종건설공사 지연발주로 낸도 폐쇄기인 동절기 공사 시공으로 부실시공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例: 옥포 반송교 가설공사의 경우</li> </ul> </li> </ul>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건설과,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장운영 부적정</li> <li>○ 가로등또는방법 등유지보수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 용지보상등 공사 추진에 애로사항도 없는데 동절기에 시공중 이어서 부실시공우려.</li> <li>○ 군내 하천골재채취장 6개소 대당 8,000만원을 투입 설치한 전산처리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밀반출 우려 및 과적차량의 단속이 어려움.</li> <li>○ 군내 가로등과 농촌지역의 방법가로등이 정부시책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나 고장이 나도 유지보수등 관리를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어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개발로 인한폐공관리</li> <li>○ 공사감독소홀</li> <li>○ 현풍권도시계획 재정비</li> <li>○ 자연공원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소유권침해</li> <li>○ 시설녹지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지하수의 활발한 개발로 폐공을 통한 폐수가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을 심각히 유발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폐공 및 지하수 개발의 효율적 관리대책이 요구됨.</li> <li>○ 화원본리도로확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780M, 사업비 9억원</li> <li>- 시공중인 부분에 철근결속및 배근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완성된 일부지점은 균열이 있음.</li> </ul> </li> <li>○ 현풍권(현풍, 유가일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86,000천원)은 대구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추진 하는것은 실효성이 회박함.</li> <li>○ 화원동산및 냉천자연농원의 자연공원주변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제한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공원지역에서 해제 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고시동 행정절차가 요망됨.</li> <li>○ '85. 5. 29일자로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li> </ul>
주택과	○ 농촌주거개선 사업추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발전대책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량 읍면별 배정기준이 형평의 원칙에 의거 배정되지 않고, 또한 주택개량 사업 경우 희망자가 많아 추첨에 의해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괄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년차별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li> </ul>

소관부서	건명	지적내용
보건소	○ 준농립지역건축 제한	○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관내 일부 면의 준농립 지역내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하계방역소독	○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 연막소독기 등 방역장비가 노후되어 방역소독차질이 예상되며 전염병발생빈도가 높은 하절기의 연막소독에 따른 예산확충및 노임을 현실화하고, 자율방역단 사기양양책을 강구 활성화하고 약품수불부 및 방역활동일지 기록내용이 미흡하고 불일치함.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부대시설 이용홍보미흡	○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서 그 이용실태가 저조하며, 시설을 군민 및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